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01호(號) 1935(昭和 10)년 1월 16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9호(號)

1935(昭和 10)년 1월 1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名) 끈[繩], 가마니[呎]
- 2 발 역(發驛) 조선총독부(朝鮮總督府) 철도국선(鐵道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 각(各) 역(驛)
- 3 착 역(著驛) 부산(釜山), 인천(仁川), 흥남(興南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率) 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 내(內) 301톤(噸) 이상(以上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4할(割) 감(減)
- 6 기 간(期間) 1935(昭和 10)년 1월 16일부터  
1935(昭和 10)년 12월 31일까지
- 7 기 사(記事) 가 본(本) 임륜(賃率)은 유개차(有蓋車)를 사용(使用)하는 것에 한(限)하여 적용(適用)되는 것이다.

나<sup>1)</sup> 본(本) 임륜(賃率)의 적용(適用)을 받고자 하는 자(者)는 비료포장용(肥料包裝用) 끈[繩] 및 가마니[呎] 혹은 특별규격(特別規格)에 의(依)한 대만(臺灣) 발송(發送) 곡용(穀用) 4두(斗) 가마니[呎]인 것을 증명(證明)하는 하기양식[左記樣式]의 증명서(證明書)를 화물운송장(貨物運送狀)에 첨부제출(添附提出)하는 것으로 함.

양식(樣式)

품 명(品名)	발 역(發驛)	착 역(著驛)	수 량(數量)	하 송 인(荷送人)

위[右]는 비료포장용(肥料包裝用: 또는 특별규격[特別規格]에 의[依]한 대만[臺灣] 발송[發送] 곡용[穀用] 4두[斗] 가마니[呎]인 것을 증명(證明)함.

소화(昭和) 년(年) 월(月) 일(日) , , , 곡물검사소장(穀物檢査所長) 인(印)

1) 역자 주: 원문에는 나가 없지만, 관보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부기(附記)하였다.